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II. 검토 의견

1. 어획물의 즉시 방류 대상에서 “제65조제3항” 삭제

- 안 제65조의3제1항¹⁾은 행정대집행으로 행정관청이 어획물을 획득한 경우 해당 어획물을 즉시 방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구·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얻은 어획물은 어구·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없는 불법어획물임을 전제로 즉시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은 즉시 방류의 대상으로 현행 제65조제3항²⁾과 안 제65조의2제1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양 규정은 불법 어구·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한 규정인 것은 공통적이지만, 구체적인 불법성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행 제65조제3항은 정당하게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 및 어업의 시기가 끝나는 등 시간적인 내용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이고, 어구·시설물 안에 합법적으로 획득한 어획물과 불법적으로 획득한 어획물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적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면 될 정도로 불법성의

1) 안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제3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2)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도지사가, 면허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자가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 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소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인 반면,

- 안 제65조의2제1항[각주 1) 참조]은 무허가·어구시설명제 위반 등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해당 어구·시설물 안에 합법적으로 획득한 어획물이 있을 여지가 크지 않으며,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할 정도로 불법성의 해소가 긴급한 경우임.

○ 한편,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³⁾, 현행 제65조제3항의 행정대집행으로 취득한 어구·시설물 및 어획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집행 사후처리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65조의3제1항이 규정하는 어획물 즉시 방류 대상에서 제65조제3항을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u>제65조제3항 및 제65조의 2제1항</u> 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u>제65조의2제1항</u> 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

2.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에 대한 업무 소관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행정관청”으로 변경

○ 안 제76조의2제2항은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안 제76조의3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에 출입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수산업법」의 전체적인 조문을 살펴보면, 주로 허가·면허·신고 등 관할 행정구역의 실무적인 사항을 소관하는 주체는 “행정관청⁴⁾”으로 규정한 반면⁵⁾, 전국적·정책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개정안의 내용은 대량의 어구 유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 어선에 출입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제대로 작성·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무적인 업무이므로, 해양수산부장관 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하는 “행정관청”을 업무

4) 「수산업법」 제6조(공동신청) ② 제1항의 경우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수산업법」 제44조(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① 행정관청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별로 조업구역,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45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③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③ 제40조·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수산업법」 제56조(조업수역 등의 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사이의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5조(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구의 생산·유통·사용·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의 소관 주체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시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⁷⁾, 해당되는 업무의 소관 주체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안 제76조의2제2항과 제76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행정관청”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 어구 신고)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 어구 신고)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u>행정관청</u>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 ①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u>질문</u> ,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6조의3(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점검) ① <u>행정관청</u>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적정하게 작성·비치·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어선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수정의견에 경미한 자구 수정 반영(주서본 참조)

7) **안 제112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의2. 제7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 또는 비치·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의3. 제7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유실어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단서 생략)

3. 기타 검토사항

- 개정안은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통지와 수리 여부에 대해 규정하는 제71조제3항 및 제4항⁸⁾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체적 요건 규정이 없는 신고를 행정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자기 완결적 신고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경영하기 좋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 개선 정책 입⁹⁾.

- 기타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김 성 완)

8) 「수산업법」 제71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어구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이하 “어구생산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생산업자”라 한다) 및 어구를 판매하는 것(수입하여 유통·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어구판매업”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어구판매업자”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9) 법제처 보도자료, “소상공인 등의 창업·영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 손본다”, 24.9.5.